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10 선고 2015가단5058283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서울신용보증재단

피고1. A

2. B

변론 종결2016. 12. 13.

판결 선고2017. 1. 10.

주 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3,865,267원 및 그 중 23,112,496원에 대하여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A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4. 8.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피고 A에게 2014. 8. 1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4. 8. 18. 접수 제11178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주식회사 C에 대한 소는

취하되었고, 원고의 2016. 12.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한 피고 B에 대한 청구의 변경은 청구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민사소송법 제263조에 의해 불허가되었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5.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신용보증한도액 1억 7,000만원, 보증기한 2016. 4. 5.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위 신용보증서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한 변제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과 원고의 채권보전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며,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4. 10. 24.경 대출금 연체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4. 12. 19. 위 은행에 52,669,460원을 변제하고 그 중 합계 29,556,964원을 회수하였으며,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은 515,801원이고, 채권보전비용 잔액은 236,970원이다.

다. 한편 피고 A는 2014. 8. 18. 피고 B과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접수 제11178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23,865,267원(앞서 본 변제금 52,669,460원 - 회수금 29,556,964원 + 확정지연손해금 515,801원 + 채권보전비용 잔액 236,970원) 및 그 중 23,112,496원(변제금 52,669,460원 - 회수금 29,556,964원)에 대하여 변제일인 2014.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A는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견하고 피고 B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바, 피고들 사이의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 B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B은 피고 A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가사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을다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① 피고들 사이에 2009. 1. 14. 피고 B이 피고 A에게 176,950,855원을 대여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작성된 사실, ② 피고 B은 2014. 2. 24. 위 공정증서에 기하여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위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을 1억 2,360만 원으로 한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설정등기와 청구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한 D의 가압류등기만 존재하였고, 피고 B이 신청한 위 경매사건의 배당요구의 총기는 2014. 5. 7.이었던 사실, ③ 그 후 2014. 7.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6,000만 원으로 한 E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진 사실, ④ 피고 A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D, E의 각 가압류등기를 말소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피고 B에게 위 경매의 취하를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 B은 위 요청을 받아들여 2014. 8. 18. 위 강제경매신청을 취하하고 피고 A와 앞서 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 A는 D, E의 각 가압류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피고 A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점, ② 피고 B은 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앞서 본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배당요구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B이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는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D, E의 가압류만 존재하였던 점, ④ 피고 B이 피고 A의 재산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고 B이 피고 A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A의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고 B은 위 계약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은 앞서 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 A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 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수익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B이 약의의 수익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박찬우

별지